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747호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748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8
고양시 조례 제2749호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고양시 조례 제2750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응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4
고양시 조례 제275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고양시 조례 제2752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고양시 조례 제2753호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2
고양시 조례 제2754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고양시 조례 제2755호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44
고양시 조례 제2756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고양시 조례 제2757호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고양시 조례 제2758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고양시 조례 제2759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고양시 조례 제2760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차 례

고양시 조례 제2761호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고양시 조례 제2762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고양시 조례 제2763호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고양시 조례 제2764호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76
고양시 조례 제2765호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0
고양시 조례 제2766호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4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176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87
------------------	----------------------------------	----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296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0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4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28호선(서정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8
고양시 고시 제2023-4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46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4
고양시 고시 제2023-450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111
고양시 고시 제2023-453호	도로명주소 고시	117

차 례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23-2947호	도시계획시설(소로2-350호선 외 1개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19
고양시 공고 제2023-29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2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23
고양시 공고 제2023-29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05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27
고양시 공고 제2023-296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올림픽컨트리클럽)]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31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47호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양시 경관위원회”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유형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4조의2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모의 사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시설 및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위배되지 아니하고”를 “저촉되지 않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시장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 경관 및 인접 가로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유도 및 경관 심의 재심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 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관 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요청하는 사항”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3.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3. 외부를 재도색하는 공동주택(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도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제3항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7장(제3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우수 경관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경관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경관조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우수경관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경관문화상을 시상할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여 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 경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 경관 조성에 이바지한 시민·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표 중 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4. 그 밖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로 외벽 면적(정면, 측면, 배면의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외벽 마감재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수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폭 25미터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7층 이상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마.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비고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기존 건축물(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건축면적과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 증축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증축행위(옥탑층, 캐노피 등의 소규모 증축을 말한다)에 따라 층수와 높이 증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입 안 자	과장 성명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팀장 성명	경관디자인팀장 유진상
	담당자 성명·전화	안서현 031-8075-2787

[별지 제5호서식]

경관 사전 검토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사업구분	구 분	☐ 신축 ☐ 증축 ☐ 대수선 ☐ 그 밖의 사항()
	대상시설	
	사 업 명	
	사업위치	
신청내용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 사전 검토 도서 2. 경관체크리스트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특례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관관리 계획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4조).
- 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경관심의 사전 검토에 관하여 규정함(제24조의2 및 별표).
- 라. 경관 심의 대상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6조).
- 마. 건축물의 경관 자문 대상을 확대 및 추가하여 규정함(제27조).
- 바. 우수 경관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3조).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48호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자치분권협의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장 성명	주민자치과장 신 건 국
	팀장 성명	자치분권팀장 김 대 성
	담당자 성명 · 전화	임 재 민 031-8075-2437

고양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49호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판단되는 사람”을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위하여 필요하면”을 “위하여”로 하고, “실시하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인 가구 중 경제적인”을 “경제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않는 1인 가구 중”을 “않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위험자”로 한다.

시장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고독사 위험자”를 각각 “고독사위험자”로 한다.

제9조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10조 중 “기여한”을 “이바지한”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성 명	복지정책과장 유 선 준
	팀 성 명	복지정책팀장 최 상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규 연 031-8075-3238

고양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 6. 13.시행)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정비함(제2조).
- 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1인 가구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0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용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권·채무 등 이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는 고양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 온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고양시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매년 상환되는 융자금 회수원금 및 이자금 등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3조(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임 안 자	과 성 명	복지정책과장 유 선 준
	팀 성 명	자립지원팀장 이 선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정 래 (031-8075-3510)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응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198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응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12.31.) 만료 및 중앙 및 공공기관의 유사 사업 시행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실효성 저하 및 신청자 수 급감으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1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 도모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

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시설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인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민간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관리인 부재, 재정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사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 또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개방화장실의 지정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편의용품
2. 안전시설 설치비 및 관리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

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을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제17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조사 등
2.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4. 이동화장실 관리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1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
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부서장(직위) 성 명	자원순환과장 안 명 렬
	팀 장(직위) 성 명	자원순환정책팀장 신 각 식
	담당자 성명 · 전화	윤 희 경 (031-8075-2685)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단위 : 만원)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5	10	20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주체	설 치 년 도				관 리 책 임 공무원		직 급					
	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비고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 수)		CCTV (설치 수)		비고 (명칭 및 설치 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 신고		처리기간						
		☐ 변경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m ² , 화장실 면적 : m ²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성용	여성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 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설내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성용	여성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 7. 21. 시행) 사항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제4조).
- 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대상을 규정함(제6조).
- 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에 대해 규정함(제8조).
- 라.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및 지정 기간 범위를 규정함(제13조).
- 마.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 규정함(제17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2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다른 조례의 준용)” 을 “(준용)” 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부서장(직위) 성 명	자원순환과장 안 명 렬
	팀 장(직위) 성 명	음식물자원화팀장 주 은 주
	담당자 성명 · 전화	김 재 영 (031-8075-2698)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방식 중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삭제함(별표 1).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3호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7에 따라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7에 따라 고양
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토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

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추천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 이상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전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⑤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최초 소집은 시장이 한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과장 성명	기업지원과장 김 봉 민
	팀장 성명	지식산업센터팀장 윤 영 용
	담당자 성명·전화	윤 영 용 031-8075-3576

고양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무가 특례시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물류단지 지정 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10조까지).
 - 위원회 구성: 20 ~ 40명(위원장: 호선)
 -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 10~20명, 금융 또는 회계 분야 10~20명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4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건설산업”을 “이 조례는 지역건설산업”으로, “규정하여”를 “규정하여 고양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 또한,”을 “하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를 “대하여”로, “공구분할”을 “공구(工區)분할”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리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일시적인 사무실 운영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단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전문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를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건설산업”을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 의회 의장이”를 “고양시의회에서”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소집하고자”를 “소집하려고”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작”을 “개 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으로 한다”를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내 건설관련” 을 “시 관내 건설 관련” 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로정책과장 서 윤 하
	팀 장 성 명	건설행정팀장 조 승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석 구 031-8075-2842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제7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제출 자료	비고(자료출처)
1. 기술능력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근로복지공단)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근로기준법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건설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2. 자 본 금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각 공제조합)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업종별 등록관청 등)
3. 시설 및 장비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건설산업 기본법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비고: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맞춰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제2조제4호).
- 나.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및 별표).
- 다.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비함(제11조제2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5호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양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인정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허가 수수료)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다”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 로 한다.

②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를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로정책과장 서 윤 하
	팀 장 성 명	도로재산관리팀장 전 경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우 031-8075-2852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주택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20,700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령 확인 후 점용료를 산정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광고탑, 광고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해야 한다.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제2조).
- 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반환 절차·방법, 허가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6호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를 “영 제5조”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관리할”을 “관리하게 할”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전거도로에 있어”를 “자전거도로 중”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도로정책과장 서 윤 하
	팀 장 성 명	자전거문화팀장 정 연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영 규 031-8075-2826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자전거 등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자전거 등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 및 편의 관련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함 (제6조제2항).
- 나. 자전거 등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24조제2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7호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률”을 “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정부기관에 등록된”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동구관리협의회)”를 “(공동구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고양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고양시 공동구협의회”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6조) 및 제6조(종전의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1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회”를 “개의(開議)”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의회 의결서

제11조제2항 중 “소요된” 을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총 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 을 “연도별 생산자 물가지수(총 지수)와 시설물 감가상각률”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요되는” 을 각각 “필요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 한다” 를 “징수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 “점·사용자” 를 “점용자 또는 사용자” 로, “점·사용료” 를 각각 “점용료 또는 사용료” 로, “수용기관에게” 를 “수용기관에” 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3월말까지 한다” 를 “3월 31일까지”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일까지로 한다” 를 “전일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월 말과 9월 말” 을 “3월 31일과 9월 30일” 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구관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고양시공동구관리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양시 공동구협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공동구관리협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공동구협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도로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도로정책과장 서 윤 하
	팀장 성명	공동구관리팀장 임 정 빈
	담당자 성명·전화	이 환 희 031-8075-2883

고양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비함(제3조).
- 나.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비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8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1) 중 “30점”을 “33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40점”을 “43점”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30점”을 “24점”으로 한다.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비 고
100점	33점	43점	24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손동숙·김미수 의원(찬성의원: 김학영 의원 등 10명)

□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관행적이고 형식적이지
아닌 객관적,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점수 배점을 조정하여 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점수 배점을 조정
함(별표 1).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59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반입수수료,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를 반영한 별표 5 기금 산정방법에 따른 금액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반입수수료와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적용계수는 매년 반영하고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는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을 산정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편익시설의 우선 이용 등)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편익시설 범위 안 일부 시설에 대해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석동 1234번지 안 풋살장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08:00부터 12:00

까지

2. 백석동 1235-1번지 안 체육시설 100분의 30 범위

③ 그 밖에 편익시설의 구체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백석체육센터 이용약관에 따른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상 영향 적용계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는 2025년 이후 조사하는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주민지원기금 산정방법(제15조제2항제2호 관련)

1. 주민지원기금 산정

주민지원기금 = 반입수수료 ×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 ×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 × 100분의 10

2.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 =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연간 운영비 ÷ 전년도 처리량

<표1> 연간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고정비	인건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일용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관리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휴가비 등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출장여비	
		회의비	소각시설관련 회의 등
		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
		급량비	식대
		통신 및 우편비	전화, 우편 등
		홍보비	소각시설 홍보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기타비용	
변동비	시설운영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예비부품, 수선비 등
		정기유지보수비용	
		전기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기타비용	
기타비용	제세금 등	기술료	기술의 사용 및 대가
		기타 제세공과금	하수도세, 면허세 등
		폐열 등 판매수입	

3. 환경상 영향 적용계수

가. 대 상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소음·수질·악취 환경기준

나. 측정위치 : 연돌(다이옥신), 최종 방류구(폐수), 시설 부지
경계선(소음·악취)

다. 적용계수

구분	2020년 이전 시설	2020년 이후 시설
법적기준 전 항목 달성	미 적용	미 적용
1항목 미달	0.025	0.05
2항목 미달	0.075	0.15
3항목 미달	0.10	0.20

4. 간접영향권 주민등록 세대수 적용계수

구분	2020년 이전 시설	2020년 이후 시설
1,000세대 미만	0.10	0.10
1,000세대 이상 ~ 1,500세대 미만	0.15	0.3
1,500세대 이상 ~ 2,000세대 미만	0.40	0.8
2,000세대 이상 ~ 2,500세대 미만	0.65	1.3
2,500세대 이상	0.90	1.8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미경·손동숙·정민경 의원(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23명)

□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관련 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산정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편익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이 우선 선정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가.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을 위해 반입수수료 산정, 간접영향권 안 거주자,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반영하고 적용 기간을 규정함(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설치된 편익시설을 간접영향권 안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함(제24조).
- 다.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별표5).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60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

가 · 인가 · 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이해림 · 임홍열 · 김미경 의원(찬성의원: 신인선 의원 등 6명)

□ 제안이유

- 건축물의 층고(層高)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정비함(제41조제1항).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61호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신현철 · 이해림 · 권용재 의원(찬성의원: 임홍열 의원 등 16명)

□ 제안이유

- 지난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가 개정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동차의 차령의 경우 관할 시·군의 조례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한편 현재의 택시 차령은 최근 차량 제조기술 발전에 따라 향상된 차량의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과거에 정해진 차령 제한 기준에 따라 택시 폐차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택시 구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향상된 차량 내구성과 품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빠른 폐차를 강제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운영을 경직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에 따라, 향상된 차량 내구성과 품질 등을 반영한 현실화된 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여 신설함(제14조).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62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를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거치구역 지정·운영)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과 제7조에 따른 거치구역 지정·운영 시 이용자,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3.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이용자를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운영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권선영 · 김민숙 · 김해련 의원(찬성의원: 공소자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급증하면서 고양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및 교통 방해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고양시 안전지침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를 제도화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명문화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지정·운영 등 대여 사업자 관련 조항을 정비, 신설함으로써 주민 안전과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전지침에 따른 안전교육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제5조).
- 나. 자전거 거치구역과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제7조).
- 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제9조).
- 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제11조).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63호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고양시에 있는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공소자 의원(찬성의원: 원종범 의원 등 23명)

□ 제안이유

-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헌혈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어 혈액의 안정적 수급이 위기에 처해 있음.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고착화된 헌혈 기피문화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헌혈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정비(제1조 및 제2조).
- 나. 고양시 헌혈장려지원사업 조항 신설(제9조).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양시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64호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채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

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영해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고양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고양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고양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안자: 문화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 한의약은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정책을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다.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함(제8조).
- 라. 홍보,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65호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명)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임명·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 배치 등) ①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배치·인사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4조(근무기간)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양시 의회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직무 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5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평가자는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자는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의회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안자:** 손동숙 · 신현철 · 최규진 의원(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11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고양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임명”에 관하여 정의함(제2조).
- 나.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배치” 기준을 마련함(제3조).
-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근무기간”에 관하여 정의함(제4조).
- 라.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마. 부당한 청탁 등의 예방을 위하여 “친족 등 임용사실의 신고” 기준을 마련함(제9조).

제2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조례 제2766호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 을 “규정함” 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그” 를 “의정담당관 및 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정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제1항 중 “에 전문위원” 을 “에는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에 대하여” 를 “사무” 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손동숙 · 신현철 · 최규진 의원(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11명)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고양시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의정담당관의 직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전문위원의 정의와 업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의정담당관의 직무에 대해 명시함.(제2조제4항).
- 나.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전문위원의 정의와 업무의 기준을 마련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 다. 정책지원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함(제4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12월 8일

고양시 규칙 제1176호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복지정책과장 유 선 준
	팀 성 장 명	자립지원팀장 이 선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정 래 (031-8075-3510)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제안이유

-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일부 정원의 직급 및 직렬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7).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2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031-8075-2394)
- 이메일 : raulsun@korea.kr
- 팩 스 : 031-8075-490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란 및 일반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작수기관	사업소	구청	동
	총계	3,445	1,068	66	251	410	857	793
	일반직	3,410	1,062	66	225	407	857	793

같은 표 6급란 중 행정란 및 행정.전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작수기관	사업소	구청	동
6급	행정	179	101	5		11	31	31
	행정.전산	5	3	1			1	

같은 표 7급란 중 행정란, 공업란, 농업란, 녹지란, 환경란, 시설란, 행정.전산란, 행정.사회복지란, 행정.시설란 및 시설.방재안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작수기관	사업소	구청	동
7급	행정	416	168	21	5	19	60	143
	공업	53	22			21	10	
	농업	15			8		7	
	녹지	24				19	5	
	환경	17	8			3	6	
	시설	154	79			26	49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14	8	3			3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작수기관	사업소	구청	동
	행정.시설	16	9	2		2	3	
	시설.방재안전	4	3				1	

같은 표 8급란 중 소계란, 행정란, 전산란, 공업란, 농업란, 시설란, 속기관, 운전란 및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사무운영란 다음에 행정.사회복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행정.시설란 및 시설.방재안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작수기관	사업소	구청	동
8급	소 계	908	249	10	62	114	238	235
	행정	357	111	5	10	33	89	109
	전산	10	7			3		
	공업	35	11			10	14	
	농업	2					2	
	시설	121	57		3	19	42	
	속기	3		3				
	운전	13	2	1	4	1	5	
	사무운영	4				1	2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8	7				1	
	시설.방재안전	8	3				5	

같은 표 9급란 중 소계란, 행정란 및 환경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속기관을 삭제하며, 같은 란 시설관리란 및 사무운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작수기관	사업소	구청	동
9급	소 계	498	69	5	22	52	148	202
	행정	207	32	4	1	10	59	101
	환경	11	4			3	4	
	시설관리	1				1		
	사무운영	2						2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기획정책관 박 광 영
	팀 장 성 명	조직제안팀장 이 정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선 용 (031-8075-239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7] 고양시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7] 고양시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직급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3,445	1,067	66	251	411	857	793	총 계		3,445	1,068	66	251	410	857	793
일 반 직		3,410	1,061	66	225	408	857	793	일 반 직		3,410	1,062	66	225	407	857	793
6급	행정	180	101	6		11	31	31	6급	행정	179	101	5		11	31	31
	행정.전산	4	3	신설			1			행정.전산	5	3	1			1	
7급	행정	413	168	21	5	18	58	143	7급	행정	416	168	21	5	19	60	143
	공업	62	22			25	15			공업	53	22			21	10	
	농업	14			8		6			농업	15			8		7	
	녹지	22				17	5			녹지	24				19	5	
	환경	16	8			2	6			환경	17	8			3	6	
	시설	153	79			26	48			시설	154	79			26	49	
	행정.전산	1	1	신설						행정.전산	2	1	1				
	행정.사회복지	13	8	2			3			행정.사회복지	14	8	3			3	
	행정.시설	18	9	4		2	3			행정.시설	16	9	2		2	3	
	시설.방재안전	3	3				신설			시설.방재안전	4	3				1	
8급	소 계	907	248	10	62	114	238	235	8급	소 계	908	249	10	62	114	238	235
	행정	354	109	5	10	33	88	109		행정	357	111	5	10	33	89	109
	전산	12	8	1		3				전산	10	7	신설		3		
	공업	33	11			10	12			공업	35	11			10	14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농업	3					3	
	시설	120	56		3	19	42	
	숙기	2		2				
	운전	14	3	1	4	1	5	
	사무운영	5				1	3	1
	<신 설>							
	행정.시설	9	7	1			1	
	시설.방재안전	9	3				6	
9급	소 계	499	69	5	22	53	148	202
	행정	203	32	3	1	10	57	100
	환경	13	4			3	6	
	숙기	1		1				
	시설관리	2				2		
	사무운영	3						3

직급별	직 렬 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농업	2					2	
	시설	121	57		3	19	42	
	숙기	3		3				
	운전	13	2	1	4	1	5	
	사무운영	4				1	2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8	7	<삭 제>			1	
	시설.방재안전	8	3				5	
9급	소 계	498	69	5	22	52	148	202
	행정	207	32	4	1	10	59	101
	환경	11	4			3	4	
	<삭 제>							
	시설관리	1				1		
	사무운영	2						2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28호선(서정로)]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429호(2022. 12. 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70-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628호선(서정로)] 사업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및 용지조서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 점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70-14번지
- 종 점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67-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소로3-628호선(서정로65번길)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3	628	6	국지 도로	415		도내동 770-14	행신동 1067-2	일반 도로	-	건고제445호 (03.10.31.)	
금회 시행	소로	3	628	6	국지 도로	415	3,087.8	도내동 770-14	행신동 1067-2	일반 도로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고양시장 (공사과)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공부상		실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 고
	동·리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덕양구 도내동	770-28	임	87	87	공	고양시				
기정	덕양구 도내동	770-27	임	500	2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20-1	연안김씨직 강공파종회				
변경	덕양구 도내동	770-29	임	24	24	공	고양시				
3	덕양구 도내동	산117-5	임	61	61	공	고양시				
기정	덕양구 도내동	787-26	임	313	31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7, 8동 *08호	김O회 이O호				
변경	덕양구 도내동	787-26	임	313	313	공	고양시				
5	덕양구 도내동	909-4	도	431	431	국	국토교통부				
6	덕양구 도내동	789-1	도	114	114	공	고양시				
기정	덕양구 도내동	790-19	전	81	81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길 8*, *01호	김O회				
변경	덕양구 도내동	790-19	전	81	81	공	고양시				
8	덕양구 도내동	790-3	도	10	7	공	고양시				
9	덕양구 도내동	788-1	도	64	62	공	고양시				
기정	덕양구 도내동	787-24	전	54	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길 8*, *01호	김O회				
변경	덕양구 도내동	787-24	전	54	54	공	고양시				
기정	덕양구 도내동	792-6	답	17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2*길 8*, *01호	김O회				
변경	덕양구 도내동	792-6	답	17	17	공	고양시				
12	덕양구 도내동	792-3	도	50	42	공	고양시				
13	덕양구 도내동	793-1	도	15	15	공	고양시				
14	덕양구 도내동	794-1	도	17	17	공	고양시				
15	덕양구 도내동	794-3	도	15	15	공	고양시				
16	덕양구 도내동	909-2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17	덕양구 도내동	787-3	도	19	14	공	고양시				
기정	덕양구 도내동	787-25	잡	17	1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	김O회				
변경	덕양구 도내동	787-25	잡	17	17	공	고양시				
기정	덕양구 도내동	787-15	도	5	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토렌****가 2***5	이O호				
변경	덕양구 도내동	787-15	도	5	5	공	고양시				

20	덕양구 도내동	786-7	전	21	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 주택공사				
21	덕양구 도내동	786-1	도	20	20	공	고양시				
22	덕양구 도내동	786-6	도	4	4	공	고양시				
23	덕양구 도내동	786-4	도	7	7	공	고양시				
24	덕양구 도내동	786-3	도	299	70	공	고양시				
25	덕양구 도내동	785-8	도	98	98	공	고양시				
26	덕양구 도내동	785-11	도	11	11	공	고양시				
27	덕양구 도내동	785-4	도	236	198	공	고양시				
28	덕양구 도내동	1125	도	56,305.3	201	공	고양시				
29	덕양구 도내동	1125-1	도	67.9	67.9	공	고양시				
30	덕양구 도내동	1067-1	도	10.9	10.9	공	고양시				
31	덕양구 도내동	1067-2	도	992.6	979	공	고양시				
합 계				59966.7	3087.8						

2) 지장물조서

- 지장물

순위	소재지	지번	종별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EA)	주소	성명	
1	덕양구 도내동	산117-4	웬스	EGI	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	주*중	
2	〃	787-14	수목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	김*희	
합계					7			

- 한전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20	좌		한국전력공사	
2	〃	STA 0+130	우		〃	
3	〃	STA 0+215	좌		〃	
4	〃	STA 0+227	좌		〃	

- 체신주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25	우		KT	
2	"	STA 0+77	우		"	
3	"	STA 0+99	우		"	
4	"	STA 0+100	우		"	
5	"	STA 0+128	우		"	
6	"	STA 0+167	우		"	
7	"	STA 0+434.4	좌		"	

- 가로등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305	우		고양시	
2	"	STA 0+338	우		"	
3	덕양구 행신동	STA 0+381	우		"	
4	"	STA 0+406	우		"	
5	"	STA 0+429	좌		"	

- 우수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242	우		고양시	
2	"	STA 0+303	우		고양시	
3	덕양구 행신동	STA 0+425	좌		고양시	

- 오수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도내동	STA 0+230	우		고양시	

- 한전맨홀

순위	소재지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비고
1	덕양구 행신동	STA 0+308	우		한국전력공사	
2	"	STA 0+310	우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46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23-228호(2023. 6. 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34-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46호선] 사업에 대하여,
2.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334-6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소로2-346호선) 조성 사업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 명 : 고양시장(공사과장)
 -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2	346	8	국지 도로	706	중로 3-152	중로 3-152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06호 (09.04.30.)	-
금회시행	소로	2	346	7	국지 도로	393	일산서구 구산동 415-3	일산서구 구산동 364-5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06호 (09.04.30.)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9 필지				4,379.2	2,734.1					
1	구산동	364-12	도	34.0	34.0	공	고양시			
2	구산동	364-11	대	45.0	45.0	공	고양시			
3	구산동	364	도	389.0	389.0	국	농수산부			
4	구산동	352-8	구	50.3	50.3	국	농수산부			
5	구산동	356-2	도	3.0	3.0	공	고양시			
6	구산동	358-1	공	1,591.4	8.0	박○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7	구산동	358-15	공	58.2	58.2	공	고양시			
8	구산동	358-10	도	46.0	46.0	공	고양시			
9	구산동	661-19	대	103.0	103.0	국	기획재정부			
10	구산동	362-5	도	37.1	36.1	공	고양시			
11	구산동	661-18	도	37.2	2.0	국	국토교통부			
12	구산동	661-44	도	0.1	0.1	국	국토교통부			
13	구산동	361-2	답	23.0	3.0	이○석	서울 송파구 마천동			
14	구산동	361-20	도	274.4	274.4	공	고양시			
15	구산동	361-22	공	54.8	54.8	오○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정○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6	구산동	366-8	대	5.5	2.0	이○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7	구산동	342-4	도	33.7	33.7	조○호	342			
18	구산동	342-3	대	147.0	147.0	조○호	342			
19	구산동	341-4	잡	33.4	33.4	신○순	서울 구로구 개봉동			
20	구산동	341-3	도	11.0	11.0	신○순	서울 구로구 개봉동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	구산동	411-2	도	22.1	22.1	유○진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소○정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2	구산동	411-3	대	1.5	1.5	유○진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소○정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23	구산동	341-5	대	68.7	68.7	신○순	서울 구로구 개봉동			
24	구산동	412-4	대	24.6	24.6	김○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25	구산동	412-5	도	43.3	43.3	김○모	412-1			
26	구산동	339-7	전	62.8	62.8	변○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	구산동	339-6	대	61.6	61.6	임○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8	구산동	334-10	도	40.9	40.9	최○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29	구산동	661-45	도	367.8	367.8	국	국토교통부			
30	구산동	414-11	대	9.3	9.3	신○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1	구산동	414-6	도	25.0	25.0	이○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2	구산동	414-10	대	81.6	79.6	이○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3	구산동	322-14	도	6.1	6.1	최○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34	구산동	321-17	대	18.3	18.3	박○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35	구산동	321-12	도	29.0	29.0	박○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36	구산동	414-12	도	66.6	66.6	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37	구산동	321-16	도	26.5	26.5	이○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38	구산동	415-10	도	65.0	65.0	구○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월드고양로			
						주식회사○ 분디푸드코 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9	구산동	415-17	대	60.4	60.4	주식회사○ 분디푸드코 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40	구산동	321-15	대	15.2	15.2	유○권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1	구산동	321-11	도	15.0	15.0	강○숙	덕양구 행신동			
42	구산동	320-8	대	40.4	40.4	피○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43	구산동	320-6	도	28.0	28.0	피○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44	구산동	415-16	창	28.0	28.0	윤○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윤○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윤○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5	구산동	415-6	도	40.0	40.0	윤○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윤○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윤○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6	구산동	320-9	전	10.2	10.2	피○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47	구산동	415-14	잡	100.3	100.3	김○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피○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48	구산동	415-15	구	30.3	30.3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구산동	388-9	구	13.6	13.6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지장물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구산동	661-18	전력주	-	1EA			
2	구산동	352	전력주	-	1EA			
3	구산동	364	전력주	-	1EA			
4	구산동	364-5	전력주	-	1EA			
5	구산동	352	통신주	-	1EA			
6	구산동	364	통신주	-	1EA			
7	구산동	355	수도계량기	-	1EA	박*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동 ***호(안양동, 주공뜨란채아파트)	
8	구산동	359	자연석	H=0.7m	31.2m	이*석	서울 송파구 마천동 ** 동우빌리지 ***호	
9	구산동	358-1	담장	H=0.7m	44.0m	박*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 ***동 ***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 아이파크*단지)	
10	구산동	358-1	문주	1.1×1.1×H1.8m	1EA	박*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로 **, ***동 ***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 아이파크*단지)	
11	구산동	364-4	석축	H=1.0m	42.0m	조*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	
12	구산동	364-4	메쉬웬스	H=1.8m	40.0m	조*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통일로 ***	
13	구산동	342	건물	조립식	65㎡	조*호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	
14	구산동	342	건물	비닐하우스	5㎡	조*호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	
15	구산동	661-5	통신주	-	1EA			
16	구산동	411	목재웬스	H=1.0m	14.0m	유*진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 ***동 ****호(야당동, 휴먼시아한빛마을)	
						소*정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 ***동 ****호(야당동, 휴먼시아한빛마을)	
17	구산동	412-1	목재웬스	H=1.0m	26.0m	김*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번길 **~**(구산동)	
18	구산동	341-2	가설웬스	H=1.8m	38.0m	신*순	서울 구로구 개봉동 **~**	
19	구산동	339-3	담장	H=0.7m	22.0m	임*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 남경빌리지 **~**	
20	구산동	339-3	건물	스라브	1㎡	임*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 남경빌리지 **~**	
21	구산동	661-5	전력주	-	1EA			

구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2	구산동	414-1	통신주	-	1EA			
23	구산동	414-2	수도계 량기	-	1EA	이*철	서울 금천구 도산로***번길 *, ***호(독산동, 광성하이츠빌)	
24	구산동	414-8	통신주	-	1EA			
25	구산동	414-8	전력주	-	1EA			
26	구산동	415-5	건물	조립식	1㎡	주식회 사세븐 디푸드 코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3, 702호(화정동, 명지프라자)	
27	구산동	661-5	통신주	-	1EA			
28	구산동	661-5	전력주	-	1EA			
29	구산동	661-5	전력주	-	1EA			
30	구산동	320-1	건물	조립식	4㎡	피*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 ***번길 **-*(구산동)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고양시장

1. 고시내용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가. 특례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준회원제 도입(안 제5조)
- 나. 회원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함에 따른 회원의 권리조항 신설(안 제3조, 제6조 신설)
- 다. 임원의 임기를 지방선거 일정 및 협의회 회계연도와 일치시켜 협의회 운영을 개선(안 제8조)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

붙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1부. 끝.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현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제3조(정의) ① “정회원”이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를 말한다.

② “준회원”이란 인구 100만을 넘은 달의 다음 달부터 정회원이 되기 전의 대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3. 8. 16.>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2. 특례시 발전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3. 특례시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
4. 특례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정회원으로 두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2023. 8. 16.>

②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자격요건이 성립된 대도시의 장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위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본조개정 단서신설 2023. 8. 16.>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위원총회 및 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2.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기타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대한 참여권
- ② 준회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2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3. 8. 16.>

제7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대표회장 1명(이하 “회장”이라 한다), 공동회장 3명(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 등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개정 2023. 8. 16.>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8. 16.>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전을 의결한다. <개정 2023. 8. 16.>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전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⑦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분권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 개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전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사무처)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회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속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404 등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2.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15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404 (주교동)	2023-12-08	20090911	대장-주교간 도로로 한 자석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544-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216번길 141 (사리현동)	2023-12-08	20100126	사리현로 시점에서 2160m에 위치한 도로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66-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214번안길 19-9 (지축동)	2023-12-08	20100126	통일로214번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0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 164-2 (사리현동)	2023-12-0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0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 164-3 (사리현동)	2023-12-0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95-4, 796-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78번길 9-12 (설문동)	2023-12-08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678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928-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2길 20 (지축동)	2023-12-08	20191008	고유지명 및 유래 인용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당로 485 (사리현동)	2023-12-0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원당로 479 (사리현동)	2023-12-0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6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29 (용두동)	2023-12-0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122-1, 12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리골길124번길 21-1 (선유동)	2023-12-08	20100126	서리골길 시점에서 1240m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122-4, 12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리골길124번길 21-2 (선유동)	2023-12-08	20100126	서리골길 시점에서 1240m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33-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78번안길 111-1 (화전동)	2023-12-08	20100126	중앙로152번길 안쪽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631-3, 631-1, 631-4, 63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237-33 (성석동)	2023-12-08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621-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침길36번길 40 (장항동)	2023-12-08	20100126	노침길 시점에서 360m에 위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곡동 116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굽산길 47 (법곡동)	2023-12-08	20090911	구산-법곡간 도로로 한 자석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83-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08번길 154 (내유동)	2023-12-08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1108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말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침길36번길 40	2023-12-01	건물 신축	2011-07-29	장항동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리골길124번길 25-7	2023-12-05	건물 신축	2011-07-29	선유동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29	2023-12-06	건물 신축	2011-07-29	용두동	

도시계획시설(소로2-350호선 외 1개소)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3-242호(2023. 6. 3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73-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2-350호선 외 1개소) 사업에 대하여,
2.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73-6번지
- 종점: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 747-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사업 (변경없음)
- 명칭: 도시계획시설(소로2-350호선 외 1개 시설: 대화2로 확·포장공사)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공사과)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명 칭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능	시 점	종 점
결정	소로	2	350	9.8~10	320	국지도로	대화동 1973-6	법곳동 747-6
금회 시행	소로	2	350	9.8~10	260	국지도로	대화동 1973-6	법곳동 747-6
결정	소로	2	362	10	110	국지도로	법곳동 751-12	법곳동 124-1
금회 시행	소로	2	362	10	110	국지도로	법곳동 751-12	법곳동 124-1

■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구 분	결정면적 (㎡)	금회시행면적 (㎡)	비 고 (최초결정일)
소로2-350호선	3,244	2,628	고양시고시 제2009-106호 (2009. 5. 4.)
소로2-362호선	1,127	1,127	고양시고시 제2019-206호 (2019. 7. 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 ☎031-8075-3142)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소로2-350호선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15필지		2,666	2,666					
1	일산서구 대화동	1973-39	도	152	152	기획재정부				
2	일산서구 대화동	1973-40	구	25	25	기획재정부				
3	일산서구 대화동	1968-34	도	142	142	고양시				
4	일산서구 대화동	1968-35	구	21	21	기획재정부				
5	일산서구 법곶동	747-9	도	594	594	기획재정부				
6	일산서구 법곶동	751-23	구	163	163	기획재정부				
7	일산서구 법곶동	751-29	구	231	231	기획재정부				
8	일산서구 법곶동	751-30	구	441	441	기획재정부				
9	일산서구 법곶동	750-34	답	429	429	고양시				
10	일산서구 법곶동	749-34	구	9	9	기획재정부				
11	일산서구 법곶동	749-33	도	12	12	기획재정부				
12	일산서구 법곶동	749-32	답	8	8	고양시				
13	일산서구 법곶동	749-29	답	50	50	고양시				
14	일산서구 법곶동	747-10	도	387	387	기획재정부				
15	일산서구 법곶동	749-30	답	2	2	고양시				

○ 소로2-362호선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1,089	1,089					
1	일산서구 법곶동	752-33	답	34	34	고양시				
2	일산서구 법곶동	751-25	구	283	283	기획재정부				
3	일산서구 법곶동	751-24	도	466	466	기획재정부				
4	일산서구 법곶동	751-26	답	140	140	고양시				
5	일산서구 법곶동	751-27	답	143	143	고양시				
6	일산서구 법곶동	752-34	구	1	1	기획재정부				
7	일산서구 법곶동	123-2	도	2	2	송*원	중면 일산리 ***			
8	일산서구 법곶동	751-31	구	11	11	기획재정부				
9	일산서구 법곶동	124-2	도	9	9	국토부				

○ 지장물조서 (변경없음)

연번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일산서구 법곶동	751-13	컨테이너 판넬건물	- -	17.9 6.7	㎡ ㎡		박*국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 ****-*				소로 2-350
2	"	751-13	컨테이너 판넬건물 비닐하우스	- - -	14.9 3.3 29.7	㎡ ㎡ ㎡		박*국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 ****-*				
3	"	751-8	간판	-	1.0	EA		송*기	고양시 일산서구 웅비로**번길 *-*				소로 2-362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2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5-1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652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2.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5-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3-652호선 외 1)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공사과장)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 분	결정			금회시행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폭원(m)	연장(m)	면적(㎡)	
소로 3-652호선	4.0	46	183.5	4.0	46	183.5	
소로 3-653호선	4.0	34	145	4.0	34	14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 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 토지조서 (소로3-65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지번	지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651-11	도	44	1	국	기획재정부			
2	토당동	665-19	대	30	7	김*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1, **3동 ***2호(행신동, 행신3차에스케이 뷰 아파트)			
3	토당동	665-18	도	38.5	38.5	김*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1, **3동 ***2호(행신동, 행신3차에스케이 뷰 아파트)			
4	토당동	665-9	대	365	5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5	토당동	665-17	도	85	48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6	토당동	659-1	대	92.1	53	공	고양시			
7	토당동	665-11	대	838	13	한*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0, **2호(토당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4(성사동)(농곡지점)	근저당 권
8	토당동	665-12	대	317	18	김*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5, ***7동 ***2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 가)(농곡지점)	근저당 권

○ 토지조서 (소로3-653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지번	지 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665-12	대	317	59	김*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5, ***7동 ***2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84(을지로2 가)(농곡지점)	근저당 권
2	토당동	665-13	대	357	75	한*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			
3	토당동	665-5	대	760	11	신*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6번길 *-9(토당동)			
						나*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6번길 *-9(토당동)			
						나*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6번길 *-9(토당동)			

○ 지장물 조서 (소로3-652호선)

구 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토당동	661-18	통신주	-	1EA		
2	〃	665-19	통신주	-	1EA		
3	〃	665-17	담장	H=1.8m, T=10cm	6M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4	〃	665-17	문주	0.5×0.5×H2.0 m	1EA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5	〃	665-9	건물	슬래브조적조	1M2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6	〃	665-17	대문	H=1.8m	1EA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7	〃	665-17	담장	H=1.8m, T=10cm	1M	박*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0, **7동 **4호(행신동, 무원마을)
8	〃	665-11	통신주	-	1EA		

○ 지장물 조서 (소로3-653호선)

구 분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토당동	665-12	전력주	-	1EA		
2	〃	665-12	화장실	RC조	4M2	김*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5, ***7동 ***2호(원흥동, 삼송마을15단지 계룡리슈빌)
3	〃	665-13	창고	RC조	8M2	한*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05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3-200호(2023. 6. 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6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305호선 (원흥동길)] 사업에 대하여,
2. 준공예정일 변경 등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 점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67-1번지
- 종 점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7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소로2-305호선)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면적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2	305	8~10	국지 도로	577m	-	일반 도로	-	-	
금회시행 (기정)	소로	2	305	8~10	국지 도로	577m	4,995㎡	일반 도로	-	-	
금회시행 (변경)	소로	2	305	8~10	국지 도로	577m	4,99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고양시장 (공사과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원흥동	548-1	도	8	8	경기도	국				기정
2	원흥동	367-6	도	116	116	경기도	공				기정
3	원흥동	578-40	구	59	59	고양시	공				기정
4	원흥동	370-12	도	37	37	고양시	공				기정
5	원흥동	578-37	구	161	161	고양시	공				기정
6	원흥동	371-3	전	7	7	고양시	공				기정
7	원흥동	371-8	임	237	237	고양시	공				기정
8	원흥동	371-4	임	28	28	고양시	공				기정
9	원흥동	371-13	도	800	800	고양시	공				기정
10	원흥동	372-4	전	53	53	고양시	공				기정
11	원흥동	372-5	전	12	12	고양시	공				기정
12	원흥동	373-3	임	60	60	고양시	공				기정
13	원흥동	371-10	임	210	210	고양시	공				기정
14	원흥동	373-13	도	39	39	고양시	공				기정
15	원흥동	371-12	임	185	185	고양시	공				기정
16	원흥동	373-17	임	164	164	고양시	공				기정
17	원흥동	375-39	전	1	1	고양시	공				기정
18	원흥동	375-20	도	187	187	고양시	공				기정
19	원흥동	375-42	전	115	115	고양시	공				기정
20	원흥동	375-40	도	1	1	고양시	공				기정
21	원흥동	375-38	전	4	3	고양시	공				기정
	원흥동	375-38	전	4	4	고양시	공				오기정정
22	원흥동	375-43	전	40	40	고양시	공				기정
23	원흥동	377-61	대	89	89	고양시	공				기정
24	원흥동	377-57	대	21	21	고양시	공				기정
25	원흥동	377-60	도	18	18	고양시	공				기정
26	원흥동	377-47	대	41	41	고양시	공				기정

27	원흥동	377-59	대	3	3	고양시	공				기정
28	원흥동	377-56	대	13	13	고양시	공				기정
29	원흥동	377-55	대	11	11	고양시	공				기정
30	원흥동	377-48	대	57	57	고양시	공				기정
31	원흥동	417-15	전	1	1	고양시	공				기정
32	원흥동	377-58	임	43	43	고양시	공				기정
33	원흥동	377-54	도	851	851	고양시	공				기정
34	원흥동	417-14	전	175	175	고양시	공				기정
35	원흥동	590-2	도	57	57	고양시	공				기정
36	원흥동	415-2	전	1	1	고양시	공				기정
37	원흥동	415-3	천	2	2	고양시	공				기정
38	원흥동	578-41	천	2	2	건설부	국				기정
39	원흥동	578-43	구	362	362	건설부	국				기정
40	원흥동	412-2	전	119	119	고양시	공				기정
41	원흥동	416-1	잡	2	2	고양시	공				기정
42	원흥동	574-7	도	246	246	고양시	공				기정
43	원흥동	421-3	전	35	35	고양시	공				기정
44	원흥동	371-11	임	319	319	고양시	공				기정
45	원흥동	377-62	대	4	4	고양시	공				기정
합 계				4,996	4,995						기정
합 계				4,996	4,996						변경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올림픽컨트리클럽)]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23-401호(2023. 11. 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올림픽컨트리클럽)] 사업에 대하여,
2.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에 의거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12월 8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7-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 명 칭 : 올림픽컨트리클럽 내 연수시설 조성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4	체육시설	골프장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7-1번지 일원	373,921	경고제75호 (88.03.21.)	-
금회 시행	4	체육시설	골프장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7-1번지 일원	373,92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체육시설용지	158,400	티그라운드, 그린, 웨어웨이, 라프, 벙커, 연습그린
건축시설용지	11,439.92	클럽하우스, 직원숙소, 휴게소(1홀), 휴게소(5홀), 복합동, 기타, 연수동
기반시설용지	22,250.56	주차장, 도로, 카트도로, 밸트웨이, 리프트, 저류지
녹지용지	181,830.52	조경녹지, 원형보전지
합 계	373,921	

- 건축계획 (변경없음)

시설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비고
클럽하우스	657.54	1,423.74	지하1층~ 지상3층	1동	
직원숙소	244.64	244.64	지상1층	1동	
휴게소(1홀)	75.69	75.69	지상1층	1동	
휴게소(5홀)	90.00	180.00	지상1층~ 지상2층	1동	
복합동	349.16	1,002.58	지상1층~ 지상3층	1동	
기타	51.60	51.60	지상1층	9동	
연수동	9,971.29	29,090.05	지하2층~ 지상4층	1동	
합 계	11,439.92	32,068.3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시행자 : (주)올림픽컨트리클럽
- 대표자 : 이관식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번지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 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개발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지번 (벽제동)	지목	지적면적 (㎡)	면적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변경 없음	467-1	채	321,803	319,034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2	변경 없음	467-2	채	27,804	27,804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3	변경 없음	467-3	채	3,266	3,266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4	변경 없음	467-4	채	14,489	14,48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5	변경 없음	463-2	채	1,686	1,524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6	변경 없음	466	채	2,172	557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7	변경 없음	468	채	6,007	5,19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8	변경 없음	479	채	518	518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9	변경 없음	482	채	1,001	1,00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10	변경 없음	466-1	채	109	10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11	변경 없음	703-10	채	307	27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12	변경 없음	703-11	채	670	15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합 계				379,832	379,921						